

# 2020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 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4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## 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 
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예산전용 내역 : 총 1건, 98,72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	전용액		전용후 예산액
부서명	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예산현액	증	감	
계					1,520,475	98,720	98,720	1,520,475
도 시 계획과	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	도시 발전 연구	도시·건축혁신 공공기획 자문단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714,950	-	98,720	616,230
				시설비 (401-01)	430,675	43,720	-	474,395
				자산및물품 취득비 (405-01)	374,850	55,000	-	429,850

## □ 전용사유 :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운영 중 미비점 보완

- 방음·방풍을 위한 창호 공사, 위원회 간판 및 가구 설치 등 환경개선
- 음향장애 해소를 위한 방송장치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매